■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하크코리아 유한회사
판매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2층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2)
판매업 대표전화		02-3484-5700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Methanaminium, N,N,N-trimethyl-, hydroxide, pentahydrate
	고유번호 또는 식별번호 (CAS No.)	10424-65-4
	용도	수질 분석용 시약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 취급시 보안경, 안면보호구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할 것 - 적절한 환기장치를 사용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취급할 것
	화학사고 예방	- 가열시 증기/공기 혼합물은 폭발성 혼합물류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것 - 금속과 접촉시 인화성 수소가스를 방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인 독성 가스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보관・저장	-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할 것 - 용기가 새지 않도록 밀폐하여 보관할 것 - 강산화제, 강산과 격리하여 저장할 것 - 부식 장소를 피해서 저장할 것
	운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함.
	기타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 물질안전원,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